

## 小作立法의 必要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現下 朝鮮의 小作問題는 地方에 따라서 各其 事情이 相異하므로 一律로써 論  
키 難한 바 있으나 이를 大體로써 論하면 첫째 制度의 改善이요, 둘째는 地主  
의 覺醒이라고 하겠다. 元來 小作制度란 것이 地方 地方이 서로 같지 아니하  
고 或은 地主와 地主에 따라서도 그 事情이 不一하여 甚히 複雜하다. 그러므  
로 이렇게 複雜한 制度를 法律이나 或은 社會的으로서 어떤 規範下에 統一케  
하는 것이 極히 必要한 問題라 할 것이요, 小作人에 대하여는 그 地位를 法律  
或은 其他 必要한 方法으로써 保障하여야 하겠다. 只今과 같이 小作人의 地位  
가 恒常 不安에 陷하여 可謂 安堵할 수 없는 때에는 이 問題의 解決은 到底  
히 期待할 수 없으며 同時에 生産上에도 莫大한 損失이라 할 것이다. 生産者  
인 小作人이 恒常 그 堵에 安치 못하고 있는 이상 어찌 그의 最善의 努力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特히 小作人의 地位를 保障할 만한 어떤 方  
法을 세워야 할 것이다. 小作法과 같은 것이 極히 必要한 方法이라 하겠는데  
이에 對하여는 或 이렇게 말할 것이다. 法理上으로 보아 所有權과 衝突되는  
點이 있는 것인즉 不可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解釋하기에 있다고 본다. 元  
來 土地의 所有權이란 絕對性을 가졌다고 하나 決코 絕對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境遇가 多하니 土地의 收用令과 같은 것은 이의 一例라고 하겠다. 土地  
의 收用令이란 것이 結局 그 國家的 利益이나 또 社會的 利益을 위하여 하는  
것인 이상 小作法이란 것이 그 國家的 或은 社會的 利益을 위하여 必要하다  
고 하면 決코 不可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或은 말하되 小作  
法이란 小作人이라는 그 私人的 利益을 위하는 것이로, 決코 國家的 또는 社  
會的 利益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小作問題가 漸漸 深刻化하  
여 그 影響이 農業生産의 消長을 左右하게 된다면 이는 國家적 견지로 보아서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일이요, 社會的으로 보아서도 어떻게나 解決치 아니하  
면 안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議論은 專門家에게 맡길 것이지만 吾人의 보는  
바로써 하면 極히 必要한 問題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提論하는 바이다. 그리고  
다음은 地主의 覺醒이 必要하다. 地主가 부질없이 目前의 利害에만 拘泥되어

永遠한 將來를 보지 못함은 甚히 寒心한 일이다. 그러므로 地主는 무엇보다도 共存共榮이라는 생각으로써 小作人의 地位를 保障하고 小作人을 指導하여서 農業의 보다 더한 發展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地主中에는 間或 覺醒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大多數는 頑強하여 苛斂誅求를 是事로 하는 者이니 萬一 지금 現狀과 같이 推進되는 때는 農村의 疲弊는 더욱 深刻化하여 實로 重大한 影響을 招致케 할 것이다.